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. 19. 2011고합1212,2011고합1231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[기소, 공판] 송강 [공판] 김신, 박태호, 이인걸, 강정석, 김성주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바른 외 18인

【주문】

1

[피고인 1]

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받음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점은 무죄.

[피고인 2]

피고인 2를 벌금 3,0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.

[피고인 3]

피고인 3을 벌금 2,0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[이유]

11. 이 사건의 공소사실

【이유】

11. 이 사건의 공소사실

[이유]

11. 이 사건의 공소사실

[이유]

11. 이 사건의 공소사실

[이유]

11. 이 사건의 공소사실

【이유】

11. 이 사건의 공소사실

[이유]

】1. 이 사건의 공소사실

[이유]

11. 이 사건의 공소사실

[이유]

11. 이 사건의 공소사실